

미국의 전국뉴스평의회 - 설립에서부터 해체까지 - 리처드 · 러닝엄 이 글은 본 위원회 위원장이 미국지역시찰 중 면담한 바 있는 미국의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 전 사무국장 리처드 커닝엄(Richard Cunningham) 씨가 특별 기고한 것이다. 필자는 1972년부터 1981년까지 미네아폴리스트리뷴 지의 최초의 기사심의위원 (Ombudsman)으로 재직한다. 편집자 주 1973년 10월 26일, 당시의 미국대통령 리처드 닉슨은 기자회견 석상에서, 그 무렵 몇 주에 걸친 TV방송의 백악관 뉴스보도야말로 일찍이 볼 수 없었던 「터무니없이 부당하고, 악의에 찬, 왜곡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 때까지만 해도 그와 같은 비난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오직 3대 TV방송네트워크에 관계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 뿐이었다. 그리고 설사 그들이 어떤 답변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신을 변명하기 위한 것으로 취급해버릴 수 있었다. 그런데 대통령이 이처럼 노발대발하기 몇 주전에 전국뉴스평의회(National News Council)라고 불리는 독자적인 기관이 「미국에서의 뉴스보도의 정확성과 공정성에 관한 항의를 접수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설치되었었다. 루크법의 편집자를 역임한 바 있는 윌리엄 아더의 지휘 아래 이 협의회의 관계자들은 문제의 닉슨 대통령의 비난에 대한 조사를 첫 주요 과제로 삼았다. 아더와 그의 동료인 네드 쉬너먼은 닉슨 대통령이나 그의 공보 비서인 론 지글러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떤 방송내용이 비난의 근거가 되었는지를 알아내려고 3개월에 걸쳐 애썼으나 허사였다. 그들은 대통령이 지적한 몇 주 동안에 주요방송네트워크가 취급한 뉴스방송의 복사판을 마련해 주기까지 했다. 그런데도 백악관측의 답변은 시간이나 일손이 부족하여 그것을 조사하여 구체적인 지적을 해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전국뉴스 평의회는 「불편부당한 기관이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뒷받침하지 않은 채 대통령이 TV방송 네트워크를 혹독하게 비판한다는 것은 공공이익에 크게 역행되는」 처사라고 논평했다. 이리하여, 전국뉴스평의회의 첫 일거리는 닉슨 대통령의 비난을 심의하여, 그의 비난이 타당성을 갖는 것인지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10년쯤 지난 1984년 4월 1일, 뉴스평의회가 뉴스 매체들로부터의 정신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주요이유로 활동을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미국 언론계의 활동을 감시할, 정부와는 관계없는 독자적인 민간기관의 필요성이 처음으로 지적된 것은, 1947년 로버트 허친스 시카고대학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자유위원회(Commission on Freedom of the Press) 의 보고서에서 였다. 이 보고서는, 그때까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었던 언론에는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이 있다는 전제 아래, 언론이 그와 같은 책임을 수행하도록 함에 있어서 정부가 모종의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를 시사했다 해서 언론계 지도급 인사들로부터 불만을 샀다. 정부의 개입을 시사하는 건의는 어떠한 것을 막론하고 언론인들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미국헌법의 수정 제 1조(First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에 배치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이 수정조항은 의회가 「언론 또는 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어떠한 법률도 제정하지 않을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편집인들 사이에는 정부 당국이건 정부당국이 아니건 간에 외부 사람들이 언론계가 하는 일에 간섭하는 것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같은 경향을 전세계에 걸쳐 모든 자유언론국가의 편집인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것 같다 뒤에 전국뉴스평의회의 회장이 되었던 루이빌 쿠리어저널 앤드 타임즈의 편집인 출신 노먼 아이작스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었던 미국신문편집인협회로 하여금 신문에 대한 항의를 심의하기 위한 독자적인 심의위원회를 협회 산하에 설치하고자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1971년에는 커뮤니케이션에 치중하면서 공공 문제들을 다루는 독자적 재단인 20세기기금(Twentieth Century Fund)이 이미 영국에 있는 것과 같은 뉴스평의회가 미국에도 필요한 것이 아닌가를 검토하기 위한 독자적인 특별조사단을 구성했다. 이 조사단은 그러한 기관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1973년에는 평의회가 구성되었다. 특별조사단의 보고에는 한가지 경고사항이 있었다. 「뉴스매체평의회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평의회의 관할에 속하는 주요 매체들의 과반수 또는 소망스러운 결과를 성취하는 데에 필요한 수(critical mass)의 협력을 얻어야만 한다」 는

것이였다. 그런데 문제의 전국뉴스평의회가 뉴스 매체들로부터 지지를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었다. 실제로, 미국언론기관들 중에서 가장 권위있는 것들이 애당초부터 지지와 협조를 거부했다. 뉴욕 타임즈의 발행인 아더 오크스 설즈버리는 전국뉴스평의회가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압력집단들로부터 다른 데로 주의를 전환시키며, 특수이권 집단에 의해서 이용당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심각한 문제로 「정부간섭을 용인하게 될 수도 있는 규제분위기를 조장하게 된다」는 점을 들어, 뉴욕 타임즈는 이 평의회와 협조하지 않을 것이며 이에 정보를 제공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국뉴스평의회는 발족했다. 10년 동안에 이 평의회는 이따금 조정되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운영되었다. 평의회는 2~5명의 직업 언론인들과 약간명의 사무직원들을 가지고 뉴욕에서 운영되었다. 이들은 인쇄매체 또는 방송매체의 뉴스보도에 대한 공정성이나 정확성을 문제 삼는 항의를 접수했다. 평의회는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우선 문제의 뉴스매체에 항의를 제기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그 뉴스매체가 만족할만한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경우에 뉴스평의회는 관계자들이 문제를 검토하도록 했다. 그러나 항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문제가 된 항의 내용을 가지고 나중에 뉴스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을, 그리고 방송뉴스의 경우에는 방송 인가권을 가진 연방통신위원회에 항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권리포기각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 권리포기각서가 중요성을 지니는 것은 그것으로 해서 뉴스평의회가 법원의 대역을 하게 된다는 점 때문이었다. 뉴스평의회는 경우에 는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다. 법원의 경우보다 사건이 처리되는 속도가 빨랐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뉴스평의회는 뉴스기관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소송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지만, 문제의 기사를 쓴 기자를 상대로 정확성, 공정성 또는 논리성을 문제삼을 수 있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항의자들에게 문제제기의 길을 열어 주었다. 권리포기에 따르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은, 그것이 언론인들로 하여금 자신이 소속된 언론사에 잘못이 있다거나 혹은 공정하지 못했다는 것을 솔직하게 시인함으로써 항의사실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려는 배려에서 구상되었다는 점이었다. 편집자나 뉴스책임자가 사실대로 시인했다가 후일 그것이 법정에서 문제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서는 허심탄회한 반응을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 뉴스평의회는 관계자들은 권리포기각서를 받았을 때 뉴스 보도기관에 대해 항의사실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그리하여 항의내용과 그것에 대한 보도기관의 답변을 비교 검토한 후 문제된 보도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대해서 필요한 결론을 내리는 보고를 했다. 이 보고는 몇 통의 전화통화나 서신으로 간단히 처리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렇지 않고 광범한 조사활동을 요하는 경우도 있었다. 뉴스평의회는 한 관계자는 캘리포니아에 가서 여러 날을 보내면서, 부유한 마린 카운티의 생활양상이 쾌락주의적인 것이라고 시사한 NBC방송의 다큐멘타리에 대해 본래 보도된 대로 그 내용을 조사하기도 했다. 뉴스평의회는 문제의 보도가 공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냈다. 평의회 의원들의 보고서가 완성되면 보도된 뉴스자료 및 조사를 통해서 밝혀진 사실과 함께 평의회를 구성하는 멤버들의 집으로 우송되었다. 평의회 멤버들은 보고서를 검토하고 조사결과에 대해서 처리하기 위해 3개월에 한번씩 회동했다. 경우에 따라서 평의회는 평의회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들였다. 그런가 하면 때로는 조사보고를 완전히 새로 작성했다. 미국의 뉴스평의회는 청문회를 갖는 일이 없었다. 그 점에 있어서 영국신문평의회와는 달랐다. 그러므로 평의회 멤버들에게 제출되는 평의회 조사자들의 보고는 쌍방의 입장을 공정하게 전달하는 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평의회 멤버들로 하여금 그것에 의존해서 독자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어야 했다. 뉴스평의회는 문제의 보도 내용이 공정하지 못했거나 정확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명될 경우 보도기관에 적용할 제재조치를 마련해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러한 권한을 원하지도 않았다. 다만 평의회는 심의결과가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견제역할을 하게 되리라는 생각이 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 평의회심의회결과가 별반 알려지지 않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AP통신과 UPI통신은 뉴스 평의회들의 심의회결과를 충실하게 전달했지만 그것을 보도해주는 신문이나 TV방송은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

이었다. 주요 보도기관 중에서 그들의 보도내용을 문제삼은 조사결과를 스스로 보도하기로 한 데는 두 군데 뿐이었다. 그 하나는 CBS방송이었다. 또 하나는 아이작스가 편집인으로 있었던 루우빌 큐리어 저널 앤드 타임즈였다. 다른 신문들이 뉴스평의회의 조사결과를 보도하려 들지 않는 것은 뉴욕 타임즈가 일반적으로 이를 보도하지 않은 사실에 연유하는 것으로 일부에서는 풀이했다. 뉴욕 타임즈에서 뉴스편집을 맡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뉴스평의회에 대한 그들의 발행인의 원칙적인 반대가 이 평의회의 활동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지 말라는 지시와 같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었다는 것이 그같이 판단하는 사람들의 견해였다. 뉴욕 타임즈의 편집국장 에이브 로젠탈은 1983년 뉴욕 타임즈의 논설면 담당 편집차장을 역임한 바 있는 뉴스평의회의 사무차장 에이브 라스킨에게 뉴욕 타임즈의 뉴스 편집진에 그와 같은 지시가 내린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욕 타임즈는 뉴스평의회의 조사보고에 대해서 이 평의회의 멤버들이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만큼의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고 미국 전역에 걸쳐 다른 보도 기관들도 똑같은 무관심을 보였다. 어떤 이들은 미국 전국에 걸쳐 뉴스 편집자들이 단순히 뉴욕 타임즈가 하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그보다도 (1)미국 뉴스 편집자들의 자연적인 자기방어성향과 (2)뉴스평의회의 활동에 관한 보도가 필요한 사항이 될 정도로 이 평의회가 언론인들 사이에서 신망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이 뉴스평의회의 조사결과가 제대로 보도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 같다. 뉴스평의회에 기사와 관련해서 항의를 제기한 집단들치고 이름이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은 분명히 없었으며, 특히 초기에는 그러했다. 모빌, 쉘, 엑슨 등의 석유회사, 선키스트(Sunkist), 미국트럭운전사조합, 미국민권동맹, 미국철도협회, 원자산업협의회(원자력 지지단체)와 같은 쟁쟁한 단체들과 니카라과정부가 뉴스평의회에 항의를 제기했던 것이다. 설즈버거가 시사했듯이, 특수이권집단은 과연 뉴스평의회를 이용했다. 임신중절에 반대하는 단체, 총기 취급을 위한 입법에 반대하는 단체, 그리고 북에이레를 영국으로부터 분리 시킬 것을 지지하는 단체 등은 것처럼 뉴스평의회를 이용한 단체들이었다. 뉴스평의회에 자주 항의를 제기한 것은 미국 에이레 통일 위원회였다. 이 단체는 뉴스평의회의 마지막 2년 동안에 5건의 항의를 제기하여 3건에 있어서 평의회의 지지를 얻었다. 이들이 제기한 것은 모두가 대수롭지 않은 문제들이었는데, 이 단체의 관계자는, 2년 동안 대수롭지 않은 문제를 가지고 항의를 제기하여 뉴스평의회가 내리는 결정을 유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에이레 공화국군과 전반적인 에이레 분리주의 운동에 대한 미국언론의 보도가 부정확하고 불공정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입증하려는 것이 그들의 계획이었다고 뉴스평의회 관계자에게 피력했다. 뉴스평의회가 언론계의 잔소리쟁이가 되거나 않을까 하는 우려는 평의회의 운영과정에서 기우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10년간의 존속기간에 뉴스평의회는 242건의 항의를 심의했다. (이밖에도 수백건의 평의회의 실무자 레벨에서 처리되었는데, 일부는 그 레벨에서 조정이 이루어지고 또 일부는 실무자들의 조사결과평의회에서 본격적으로 심의할 정도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명되거나 항의자의 후속 조치가 없기 때문에 기각되었다.) 평의회가 심의한 242건 가운데 120건은 정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64건은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18건은 부분적으로 정당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40건은 기각되거나 취하되었다. 뉴스평의회가 한 일에서 기사에 대한 항의 처리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 독자적으로 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보고」한 것이었다. 뉴스평의회는 그 동안에, 유네스코에서의 언론인 허가제에 관한 제안으로부터 시작하여 기자들의 예심방청문제를 예워싼 미국 법원들과의 분류와 신문발행인에 의한 정치활동의 적부문제에 이르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약 45건의 성명을 발표했다. 신문과 개개 언론인들은 언론자유와 관계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우려의 대상으로 뉴스평의회에 제기했다, 예를 들어 뉴 런던 데이(커네티컷 주)는 미국 잠수함들의 주요 건조회사인 일렉트릭 보트회사가 보도관제를 시행하고 이 신문에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려 하자 항의를 제기한 것이다. UPI통신은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마약 중독자갱생원(Synanon)에 대한 항의를 뉴스평의회에 제기했다. 자금을 유용하고 설립목적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었던 이 기관은 그들에 관한 기사를 취급하기만 하면 자

동적으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장을 보냄으로써 그러한 소송에 맞서서 법정투쟁을 할 능력이 없는 군소 신문들을 비롯한 언론 기관들을 괴롭히며 협박하고 있었다. 뉴스평의회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소속 요원들로 하여금 조사를 하게 하거나 혹은 언론인들을 고용하여 조사 연구케 했다. 공정한 재판에 대한 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상형, 기자는 경찰에 어느 정도로 협조해야 하는가, 언론의 장난질(journalistic hoax), 폴리처상 제도, 정보소스의 적절한 표시, 신문에서의 심의위원의 역할, 8세의 마약중독자에 관한 폴리처상 수상기사(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되었다)를 게재케 한 워싱턴 포스트의 결함. 뉴스평의회는 이러한 조사연구결과를 책자로 발간했는데, 그것들은 언론에 대해서 부당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뉴스 매체들에 대한 일반 독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언론의 문제와 언론인들의 활동에 있어서 지침이 되는 논리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뉴스평의회 조사연구와 책자발행은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과 함께, 뉴스평의회 심의결정이 널리 홍보 되지 않은 사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궁극적으로 이 평의회 존재에 중지부를 찍는 제2의 큰 문제를 조성했는데 그것은 일반대중이 뉴스평의회라는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었다. 어디에서건 간에 뉴스평의회에 관한 뉴스행사가 나가기만 하면 그 기사가 나간 곳으로부터는 평의회에 항의나 문의가 들어오곤 했다. 그러나 뉴스평의회 관계자들이 그들의 소속을 사람들에게 밝혔을 때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니 그런 기관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는데요」라는 것이었다. 이처럼 뉴스평의회에 대한 일반대중의 인식이 거의 없었고 주요 뉴스 매체들로부터의 전반적인 성원이 없었으므로 평의회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조달에 영향이 왔다. 뉴스평의회는 초기에는 주로 민간재단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했던 것이나 평의회 존재가 인정을 받게 됨에 따라 차츰 바른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자금을 가지고 그와 같은 민간재단의 출연금을 대체해 나가려는 것이 애당초부터의 구상이었다. 그리고 해가 거듭되면서 다른 소스로부터 제공되는 자금은 실제로 증가하기도 했다. 1983년까지는 뉴스평의회 연간예산 34만 달러 중에서 재단들이 제공한 몫은 41퍼센트로 줄어들었으며, 기업체와 개인들이 29퍼센트를 제공했고 뉴스 보도 기관들이 29퍼센트라는 괄목할만한 몫을 담당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돈들은 뉴스평의회 사무요원 세 사람이 주로 그들의 개인적인 신망과 친분을 바탕으로 해서 끌어들이는 것이 있다. 이 세 사람은 아이작스, 아더 그리고 라스킨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보니 마냥 같은 데로 가서 돈을 달라고 하기가 어려워 졌으며, 그렇게 되면서 뉴스평의회가 발족 당시에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었던 기본적인 결함이 노정되었다. 즉, 뉴스평의회 언론심의활동에 직접 관계하지 않는 어떤 개인이나 위원회를 통하여 제도적으로 자금을 마련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초기의 주요 자금 소스였던 20세기기금과 마클재단으로부터 비상원조를 받는 한편 리처드 세일런트를 회장으로 들여앉혔다. 세일런트는 미국 언론계에서 널리 알려진 매우 덕망 있는 인물이었다. 그는 CBS뉴스의 사장이었고 뒤에 NBC방송의 부회장을 역임한 사람이었다. 게다가 그는 뉴스평의회를 구상해 낸 20세기 재단의 특별위원회의 멤버이기도 했다. 그는 또 뉴스평의원회의 당초 평의원으로서 CBS방송으로 하여금 이 평의회를 지지하도록 하는 공작을 했다. 뿐만 아니라 세일런트는 CBS방송과 NBC방송으로 하여금 뉴스취급을 취한 논리기준을 채택하도록 작용한 사람이었다. 세일런트는 뉴스평의회가 성장하거나 아니면 종식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는 평의회로부터 평의회 회의가 열리기 전에도 언론문제에 대해 독자적으로 성명을 발표할 수 있도록 승인을 받았다. 그는 뉴스평의회가 본격적인 연구검토를 하여 「백서」를 발표해야 할 25건도 더 되는 문제들의 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뉴스평의회가 언론계와 일반대중의 주목을 끌 수 있는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종래의 최소한 2배, 아니면 3배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서는 뉴스평의회가 이중구조로 개편되어야 한다고 세일런트는 확신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운당 이사회로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저명 인사들로 구성되, 반드시 언론계와 관계가 있는 인사가 아니라도 무방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이사회는 주로 저명 언론인들로 구성하여 조사연구과제를 배정하는 기능을 맡도록 한다는

것이였다. 그때까지는 평의회는 15명 내지 18명으로 구성되었고 구성원의 과반수는 언제나 언론계와 관계가 없는 인사들이 었는데, 그 취지는 그러한 인사들로 구성해야만 일반대중의 입장을 보다 낮게 대표할 수 있다는 데에 있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평의회의 표결이 언론계 출신 인사들과 다른 분야의 인사들 간의 대립으로 나타난 적이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언론계 인사들이 뉴스매체에 대해서 외부 인사들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이와 같은 개편안을 뒷받침한 생각은 만약 동료 언론인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면 뉴스평의회가 언론계의 정신적 지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였다. 그러나 운당 이사회나 심판이사회를 구성을 위해 저명 인사들과 접촉하기에 앞서, 뉴스평의회 집행위원회는 평의회를 개편한다면 정신적으로 지원을 해줄 것인가를 주요 언론매체에 묻기로 결의했다 뉴스평의회의 대표들은 ABC뉴스, 타임 라이프사 그리고 로스앤젤레스의 막강한 타임즈 미러사를 찾아갔다. 그런데 어느 곳에서도 답변은 부정적인 것이였다. 뉴스평의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건 언론계의 지지가 강화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으리라는 것이였다. 뉴욕 타임즈, 나이트 리더게 신문, NBC 방송의 반대가 기존 사실인 상황에서 다른 주요 언론기관이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이자 뉴스평의회는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게 된 것이다. 1984년 4월, 뉴스평의회는 활동을 중지하고 서류와 기록들을 미네소타 대학에 넘겨 주었는데, 이 대학에는 뉴스평의회의 장학금과 지원의 역사적 기록을 가진 신문대학이 있다. 미네소타에는 미국 전국에 걸쳐 하나밖에 남지 않은 주 뉴스평의회가 있어서 주내의 모든 인쇄 및 방송뉴스매체를 다루고 있다. 뉴스평의회가 활동한 마지막 해 에는 특수이권집단 임신중절반대, 반공, 기업, 보수세력, 여권)의 주관 아래 6개 이상의 뉴스매체 감시 기관들이 생겨났다. 전문 언론인협회(Society of Professional Journalists)가 발행하는 잡지에 최근에 기고한 한 논객은 언론을 감시하면서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특수 이권 집단들이 워낙 많으므로 뉴스평의회가 불필요해진 것인지도 모른다고 관측했다. 그와 같이 말한다는 것은 객관성과 불편부당을 고수하려는 뉴스평의회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한 소치이다. 뉴스평의회가 사라짐으로써 미국에서는 뉴스 매체에 대한 항의를 객관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토론의 광장이 없어진 것이다. 언론에 대한 평론과 개인적으로 언론을 비평하는 사람들이 요긴하고도 귀중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객관성을 지배하며 언론의 책임성과 자유에 관심을 갖는 심의기관이 수행하는 역할과 같은 것일 수는 없다.